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사무관 승진시험 폐지 이후 사무관 승진제도 개선을 위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실질화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교육이수제 도입

5급 이하 법원·등기사무직렬 및 사서직렬 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승진심사의 대상이 되거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1항 신설)

나. 실질화된 평정제도 구현 및 현실과 부합하는 심사기준 정비

근무성적평정의 결과,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및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심사기준에 추가하고, 승진서열, 학력 등 실질평정제도의 취지 및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요소를 삭제하거나 변경함(안 제35조의7)

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의 개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 중 훈련성적평정은 폐지하고 평정점 반영 비율을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40퍼센트로 함(안 제 36조제1항)

라.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삭제

훈련성적평정의 폐지로 해당 조문의 각 호에서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6조의2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2호)

4.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교육훈련과 인사관리) ① 5급 이하 법원·등기사무직렬 및 사서직렬 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승진심사의 대상이 되거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제10조의3 단서에 따라”를 “제1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35조의7 제목 외의 부분 중 “심사한다.”를 “종합하여 심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성적평정 결과
2.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
3. 당해 직급에서의 보직경력 및 근무연수
4. 인품(목표달성도 또는 근무성적평정표를 기초로 국가관과 공직자로서의 청렴도, 상사, 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도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5. 능력(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능력과 소속 직원들과의 소통능력)
6.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 대한 공헌실적
7.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음주운전, 성폭력 사건 등 범죄경력
8. 그 밖에 상벌, 건강, 가정생활, 생활태도 등

제36조제1항 중 “근무성적평정점 45퍼센트, 경력평정점 40퍼센트, 훈련 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을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4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

제36조의2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4항 단서 중 “제10조의3 단서에 따라”를 “제1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43조제2항 단서 중 “제10조의3 단서에 따라”를 “제1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단서 중 “제10조의3 단서에 따라”를 “제1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의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부여된 근무성적평정점

에 관하여는 각 15점을 가산한 점수를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제3조(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및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수한 전문교육은 제10조의3제1항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한다.

1.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2. 승진서열
3. 해당 계급에서의 보직경력

4.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력

나. 경력

다. 전문분야

라. 인품 목표달성도 또는 근무성적평정표를 기초로 국가관과 충성심, 공직자로서의 청렴도, 상사, 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도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마. 능력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 연구, 집행능력 및 업무추진능력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 통솔능력

바.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 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 대한 공헌실적

사. 적성

아. 그 밖에 상벌, 훈련, 면허, 자격, 건강, 가정생활, 생

하여 심사한다.

1. 근무성적평정 결과
2.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
3. 당해 직급에서의 보직경력 및 근무연수
4. 인품(목표달성도 또는 근무성적평정표를 기초로 국가관과 공직자로서의 청렴도, 상사, 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도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활태도 등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6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45퍼센트, 경력평정점 40퍼센트, 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해당 기관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② ~ ⑤ (생략)

제36조의2(동점자의 순위)

5. 능력(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능력과 소속 직원들과의 소통능력)

6.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 대한 공헌실적

7.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음주운전, 성폭력 사건 등 범죄경력

8. 그 밖에 상벌, 건강, 가정생활, 생활태도 등

제36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

-----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40퍼센트의 비율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동점자의 순위)

(생 략)

1. ~ 2. (생 략)

3. 교육훈련평정점이 우수한 사 략

4. ~ 5. (생 략)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생 략)

1. (생 략)

2. 훈련성적평정 대상이 되는 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 6. (생 략)

② (생 략)

제41조(5급 및 7급에의 승진임용)

① ~ ③ (생 략)

④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5급 공무원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대해서는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9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다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5. (현행과 같음)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5급 및 7급에의 승진임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에 대해서는 합격결정점수 9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제10조의3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격결정점수만으로 산정하고, 제44조제3항에 따라 7급 일반승진시험을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지역별로 작성한다.

② (생략)

-----, 제10
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
-----,

-----.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연 락 처	(02) 3480-1937